

승실대학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규정명칭 : 승실대학교 학칙
2. 개정내용 : 세부내용 개정대비표 참조

구분	규정번호	규정명	개정내용
개정	3-1-1	승실대학교 학칙	가. 제적 통보 방식을 실효성 있는 연락수단으로 변경하고자 함

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기획조정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* 제출기한 : 5일 이내
- * 제출방법 : 본교 규정관리시스템 사전공고 페이지에 의견 제출
- <https://rule.ssu.ac.kr/lmxsrv/main/main.do>
- * 문의 : 기획조정실 기획팀(820-0133)

2026. 04. 22.

기 획 조 정 실 장

[승실대학교학칙] 개정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 사유
<p>제29조(제적·자퇴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.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. 이중 학적을 가진 자 (학사과정) 4.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5.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인 자(학사과정) 6. 계약학과 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입학당시 산업체를 퇴직한 자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각 휴학으로 전환하거나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의해 제적 대상이 되는 경우, 사전에 이 사실을 배달증명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되 <u>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해당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.</p>	<p>제29조(제적·자퇴) ① <좌동></p> <p>② <좌동>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되는 경우, 사전에 이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좌동></p>	<p>· 불필요한 실물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(물적, 인적) 절감 필요(현재 배달증명, 문자 발송, 이메일 발송,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 공지 진행 중), 주소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번호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연락 수단으로 변경하고자 함</p> <p>※ 매학기 반송 건수 多 (미수신/주소지 오류/고의삭제/해외 거주지 등)</p> <p>※(학부) 등기 발송 건수 - 2025-1: 122건 (약 366,000원) - 2025-2: 155건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 사유
		(약 465,000원) - 2026-1: 117건 (약 351,000원)
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.	